해외 · 지역구보다, 국회 법안심사부터 하라! 5월28일 본회의에서, 개인 · 기업의 사활 걸린 적체된(9.646개) 법안처리하면 유권자 박수! 아니면 낙선운동 하기로!

대통령과 국민을 속이는,국민피해/규제법(저작권법 등), 청부입법과 비위사법을 고발한다

매년 150만(하루4천여명)국민이 저작권법 위반했다 협박당해-자살까지, 국가형벌권을 남용 · 악용케 만든 저작권법의 비친고죄 조항(제140조 단서)을 폐지하고 친고죄로 환원하라!

이미 FTA협정문 왜곡해석, 비친고죄 부작용은 확인됐다, 더이상 한미FTA협정을 빙자하며, 국익훼손/민생규제-저작권법 개정<친고죄로 환원>을 방해 하지 말라!

1 혈세낭비, 기본권침해-국민피해주는 꼼수 입법인 상고법원 설치 및 변호사강제주의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2 대법원의 부당한 판결지체와 불공정심판의 책임은? 재판연구관(법관108명,외10명)들의 밀실 비위는 무책임? <우측하단>

3 개헌전이라도 단원제 국회의 졸속입법<전문성 부족과 청부청탁에 의한>병폐를 반드시 혁파해야 하며, 국회법 개정전이라도 법사위 등에서 소관 상임위와 조율조정하되 하자가 큰 졸속법안들은 재심사하여 선진화법/김영란법 등 악법을 걸러내야 한다!

정부(문체부)의 저작권 관련 거짓말, 한미FTA협정 때문에 무역 보복이 우려된다는 등, 한미FTA를 빙자했던 문체부 주장의 허구성을 반박하면서, 국민여러분과 박근혜대통령님, 언론인여러분께 '국가' 그 자체인 '존엄한 법'의 제정/개정과정의 비리, 사법절차위반를 고발하며 척결을 호소합니다.

1. 본 성명서는 하단 NGO연합단체들과 수년 전부터 간담회, 세미나 등으로 여러 차례 논의를 하고 법률연맹이 자료조사 및 법개정 운동을 주관해 왔던바, 관련 전문서적이나 국내외자료는 5천여쪽 이상이며, 약 5천명의 대학(원)생을 대면조사한, 관련법의식조사 등의 보도자료 <신문, 방송보도됨>등도 참고바람.

-반대의견- 문의/토론 환영함.
법률(소비자)연맹 홈페이지 참조 <WWW.GOODLAW.ORG.>

2. 긴급히 드릴말씀은 정부/정당/공직자/법은 당연히 국민을 위해 존재하므로, **우리 국민들이 법과 정책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그 실태파악 후 사실이라면 서둘러 개정해야 할 터에,** 국민고통은 안중에 없고, 협잡을 하다니, **검찰연감, 사법연감, 법률연맹의 2년에 걸친 법의식조사 결과가 일치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즉,하루4천여명 매년150만명의 청년대학생과 국민들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겁박을 당하며 자살까지하는 등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구구한 주장들을 접고 국리민복에 나서야 할 것이다.

3. 저작권 전문가들의 참 의견들
1)정진섭 부장검사-법무부 정책연구과정, 법학박사, 지식재산권 전문부장검사- **'수사기관에서 본 지재권 친고죄 조항'** "선진 각국에서도 지적재산권법에 관하여 친고죄로 규정하거나, 아예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경우가 많다. Global Standard에 비추어 볼 때, 친고죄 조항은 전혀 저촉되는 것이 없다"고 강조하였다.
2)이대희 교수-문체부산하 저작권위원회 위원, 고려대 교수, 뉴욕주 변호사, 법학박사-협정문에는 '법적조치'에 대한 정의가 없으므로 이를 비친고죄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기소'에 한정시키지 않고 '수사' 등도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친고죄로 운영하더라도 KORUS FTA 이행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되지 않는다.** 한미FTA협상문 속의 '법적조치'(Legal Action)를 '기소'라고 해석 할 근거도 없다.
3)MBC 사장 출신 최문순 현 강원도지사(당시 민주당 국회의원)-저작권자들의 의뢰를 받은 로펌들이 저작권법이 가진 저작권 보호 측면보다는 정해 놓은 가격을 합의 권유해 저작권 위반 사례를 마구 뒤져 마음대로 고소를 남발해 합의금만 챙기고 있다
4)문화연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국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고, 저작물의 합법적인 이용조차 위축시킬 수 있는 위헌적인 이번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은 해당 상임위로 돌려보내 전면 재검토되어야 마땅하다

4. 한미 FTA협정문을 왜곡해석
(1) '이 장(this chapter)' 은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전반에 관한 장임. 이 장에서 보호하려는 지적재산권의 핵심사항은 특허권이며, **한미FTA협정 체결이후에도 산업통상부에서 특허권, 신안권, 디자인권을 현행대로 친고죄로 하고 있음. 같은 국가기관인 산업통상부와 문체부가 같은 FTA조항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것임.** 이는 지재권 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와는 다르게 문체부가 FTA 지적재산권 조항을 엉터리로 해석하고 있다는 반증임.
(2) 문체부에서는 '할 수 있다'(may)를 외교관례상 '해야 한다(must)' 라고 왜곡해석하고 있는데, 문체부의 주장대로 외교관례상 상대국에 어떠한 것도 '해야 한다' 고 강제할 수 없다면, 협정문의 내용도 당연히 '할 수 있다' 고 해석하는 것이 정당한 것임. **FAT협정문을 '해야 한다' 고 해석하면 미국이 한국을 내정간섭하는 것이 되어 버림.**
(3) 문체부에서는 '법적조치'(legal action)를 단순히 기소(indictment)로 왜곡했는데, 기소는 수사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며, 수사 이후에 검찰이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법적조치를 기소로 한다면 오히려 Legal Action의 내용을 축소하는 것이 되어버리므로, 법적조치는 수사, 단속 등을 모두 포함하는 내용이 합리적임.** 그리고 미국의 경우 지적재산권의 경우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을 형사처벌하는 경우가 거의(99.%)없고 민사적인 책임만 묻고 있으므로, 법적조치를 '기소'로만 한정한다면 **반대로 미국내에서 벌어진 우리나라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조치도 할 수 없다는 결론이므로 법적조치는 수사, 단속 등으로 해석하는 것이 백 번 타당함.**
(4) '당국'(its authorities)을 '검찰' (기소기관)이라 한정 축소해석했는데, 당국은 법원, 검찰, 경찰, 특허청, 문체부 등으로 다양하게 해석하는 것이 현실에 부합하며, 저작권 침해사범을 형사처벌하지 않는 **미국에서의 우리나라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정당한 방법임.**

1. 저작권법 비친고죄 조항을 개정하라는 여론을 막으려는, 정부안 · 교문위 대안은, 경악 자체다

경악/분노할 청부입법의 일단-지난해 2014.4.23~24 국회 교문위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을 보조하는 **박O수 전문위원**-알고보니 비친고죄개악을 강행한 문체부 임원<겸직>이었음-**이 허위 사실로 검토 보고를 하며,** 법사위원장(현) 이상민의원, 국토위원장 박기춘의원(현), 김희정의원 여성가족부장관(현), 김태년의원 교문위 간사(현) 등 **4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4개법안의 '친고죄'로 개정하자는 법안을 오히려 비친고죄를 강화한, 즉 180도 바꿔놓고 마치 4개법안 취지를 종합한 듯이 속인 '대안'은 정말 한심했다-** 그 내용과 절차는 곧, 문체부의 안이었고 친고죄 환원을 차단 방해하기 위한"갑히 국회와 국민을 능멸하는 협잡이었다-즉, 법체계도 엉망, 6개월간 100만원까지 침해해도 합법, 명확성원칙 위반, 영리목적조항 또한 거의 모두를 처벌할 수 있게 함.

2. 친고죄 환원에 대한 법사위의 법안심사(2015.5.6)도 정부의 방해, 한미FTA를 빙자한 전문위원 강O일, 임O현의원의 발목잡기로 친고죄법안은 또 밀렸다

현행 저작권법의 비친고죄 조항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야기된지 오래다. 2006년말 법 개악전부터 **모든 전문가들, 모든 관계자들 심지어는 문체부의 저작권위원회 위원이며 저작권 권위자, 저작권분야 전문부장검사, 변호사 언론인 등이 각국의 입법례까지 인용하며, 한미FTA협정을 빙자하지 말라.**

협정문이나, 미국<USTR>이 한국에게 비친고죄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고 확인시켜줘도 FTA협정문 해석상 비친고죄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고집했다. **그 문리해석도 부당하지만 실제로 미국의 사법제도나 관행, 문화를 제대로 모르거나, 알고도 국민을 기망하는 것인지, 미국도 원치 않는 저작물 이용자들을 정부가 나서서 규제, 처벌하려는 것이다.**

3. 미국 저작권법은 1년~3년이하의 처벌조항을 우리법은 5년이하라고 처벌을 훨씬강화했다.

저작권법은 1957년 법 제정시부터 친고죄로 규정하여 왔는데, 2006년 한미FTA때문이라면서, 거대 인터넷기업의 저작권침해로부터 **개인 저작권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비친고죄 도입을 강행할 때에, 저작권자는 물론 교수, 변호사 등 105명의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인사 등 모두가 반대했으나, 정부(문체부)주도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서 2006년 12월 28일 날치기 졸속 통과시켜 2007년 6월 29일 시행됨, 이후 로펌 등에서 인터넷으로 불법다운로드를 받는 사람들을 조사하여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법적 문제를 삼는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으로 고소 · 고발이 폭증(연10만건)하였으나, **정부는 한 · 미 FTA의 국내 이행을 빙자하여 2011년 11월 2일 또다시 비친고죄 조항을 더욱 확대(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하는 개정안을** 강행, 국회통과, 12월2일공포 · 시행되었는데, 이 법은 **저작권 강국인 미국보다도 훨씬 심한 규제인 "미국의 1년~3년이하의 실형을 한국저작권법은 5년이하로 가혹한 처벌규정을 두었고,**

또한 자신을 위하여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다운로드 받는 것까지-미국에선 상업적 이득이나 금융이득으로 보지 않아 형사처벌의 대상에서도 제외됨-**처벌대상으로 하는" 세계 최악의 저작권규제 입법을 하였고,** 그 후 저작권 위반했다고 하며 합의금 장사가 우후죽순 등장했고, **검/경 등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수사도 정당한 법집행처럼 잦아졌다.**

4. 정부(문체부)는 세계최악의 규제 비친고죄 폐지를 방해말라

비친고죄 폐지를 반대 · 방해하는 측은 법파라치 로펌이나 저작권규제 예산과 특별사법권을 득한 문체부와 이들의 로비나 청탁을 받는 이들 밖에 없다.

저작권법 비친고죄 폐지법안은
① **여 · 야당의 대립법안도, 진보 · 보수의 이념갈등 법안도 아니고,**
② 저작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전혀 불이익이 없는 법안이며.
③국가예산을 절감하는 법안이며
④ **통상마찰 등 국제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개정안도 아니고,**
⑤ 저작권산업발전에 영향을 주는 법안도 아니며,
⑥ **같은 지식재산권법인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등과의 형평성에도 부합하며,**
⑦ 저작권 이용자들(국민)을 범죄자로 간주하여 처벌해야 한다면서 예산과 특별사법경찰권 등의 권한을 확대해 온 정부(문체부)의 규제위주정책 혁파를 위한 규제철폐 법안임에도 정부(문체부)의 방해가 심각하다.

5. 미국 등 선진제국의 법체계와 사법제도의 관행은 우리와 크게 다를 뿐 아니라, 세계적인 저작권법 현황과 추세는 '공유'다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저작권자가 아님에도, 법파라치 로펌 등 제3자나 검찰 경찰이나 특별사법경찰관 등 국가공권력이 직접 수사하고 고발하는 나라는 비슷한 사례도 찾아보기 어렵다.

① **영, 프, 독, 이, 러, 호주, 캐나다 등 선진 40여개국에서는 '녹색당' 보다 지지율이 높아(13%) 의회에 진출 중인 'PIRATE PARTY' 란 저작권을 공유하자는 정책정당들이 활동 중이고,**
② 우리 저작권법의 모델인 독일과 일본 등 대륙법계 또한 친고죄가 원칙이며,
③ **비친고죄 규정을 둔 미국에서는 저작권법 위반문제도 99.99% 국가가 형벌권을 작동하거나 제3자가 나서서 협박 · 고발하는 일은 없으며,** 공공의 이익을 크게 침해한 소위 중대한 범죄의 경우라야, 기소/심판<약1.5%>하고 있으며,저작권자가 손해배상(민사)을 청구하거나 대부분 무료이용은 법적 문제화 하지 않는다.

6. 현행 비친고죄 조항의 심각한 사회문제-합의금장사-로펌

2006년 12월말 전문가, 변호사, 저작권단체, 이용자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저작권 비친고죄 법안을 날치기 통과, 시행(2007. 6) 한 이후의 부작용 만연함.
① **SAT저작권자인 ETS(미국 민간업체)나 미국정부가 문제제기하지 않았음에도, 검찰이 나서서 세계유례 없이 미국 수능시험(SAT)지 기출문제를 구입해서 공부하고 학원교재로 사용했다고 문제지유출 업무방해 등 혐의로, 대대적 압수수색, 저작권 위반 수사, 기소를 하는 등 국가형벌권 남용으로 저작권자와 그 이용자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줬고, 국내외 국가망신을 초래하였고,**
② '합의금장사' 를 하는 법 파라치 로펌(Law-Firm)이 저작권법위반을 고소 · 고발 협박하여 100억원 이상씩 수입을 올리는 20여개의 로펌이 적발(경찰발표, 서울신문)되었으며,
③ 비친고죄법으로 개악 이후(2007.6) 저작자도 아닌 제3자의 고소 · 고발 건수가 10만건에 육박하여, 4배이상 급증하였고,
④ 매년 150만명(하루 4천여명)이 협박을 받고, 자살까지 하는 사회문제화 되었다.
⑤ **저작권보다 강한 지적재산권법인 특허법, 디자인법, 실용신안법도 해당 권리침해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어,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⑥ 저작자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사적자치의 원칙에도 위배되며,
⑦ **수사력 등 국가공권력 낭비로 중대범죄의 예방과 척결에 수사력을 집중할 수 없게 되고,**
⑧ 저작자와 저작권 이용자의 모두의 권리침해로 저작권산업발전에도 오히려 저해가 된다.

저작권법 비친고죄 관련한 검찰의 이율배반적 위법부당한 사건처리 ;
1)국내언론사 등의 저작권을 침해한 -270명 국회의원이 고발된 사건- 무혐의 불기소-재항고중임,
2)미국의 저작권자 관련, SAT미국 수능문제지 사건 -강제수사후 기소- 재판은 중단됨. 위 자료 - 법률연맹

1) 국회의원 270명의 저작권법 위반은 무혐의, 국민들은 유죄

① 2014년 2월 6일 서울중앙지검에 국회의원 270명이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보도기사 등을 무단이용했다가 법률연맹으로부터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고발되었다.
② **일반인이나 학생 같았으면, 거액의 합의금 협박을 받었거나, 수차례 검찰 등 수사기관에 불려다니면서 수사를 받고, 최소한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등을 받았을 것이다.**
③ 그러나 검찰은 명명백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5개월 동안 수사를 하지 않다가, 7월 말 국회의원들의 기사도용행위를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이라면서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④ **이에 2014년 8월 7일 저작권자들의 모임인 한국신문협회에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발된 의원 270명을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뉴스의 무단 게재는 신문사 이익침해" 라며 강력 반발했다.**

2) 미국 수능시험 SAT문제지 관련-고소고발없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 · 기소 · 재판중

①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2013년 2월 무슨 중대한 첨단범죄를 적발 수사하듯이 강남 학원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였고, 이것을 MBC를 필두로 도하 언론에 보도하였다. 학원에서 미국 수능시험(SAT) 시험문제지<당연히 기출문제>를 사고 팔아서 미국의저작권자인 ETS와 컬리지보드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문제유출 등 업무방해했다고 보도했다.
② **이 압수수색보도로 미국의 수능시험업체 ETS는 113년 역사상 최초로 전세계 여러국가중에서 유독 한국만 5월 국가단위 SAT시험을 취소했다. 1천명이 넘는 학생들이 시험응시를 못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시험부정국가로 낙인이 찍혔다. 검찰의 추가 압수수색과 보도로 또다시 6월 SAT 시험까지 취소되었다.**
③ 그러나 8개월이상 강제수사 결과 우리나라에서 시험지 유출 등 부정행위는 없었고, 시험부정행위를 한 사실도 없었고, 학원에서 기출문제지를 구입하여 교육한 것을 미국SAT출제사 ETS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수사한 것이었다.
④ 그런데도, 검찰은 2013년 11월 17일 기자회견을 자청하면서 무슨 거악을 척결한 듯이 문제지를 사고 판 학생, 군인들을 시험지 브로커라고 하고, SAT 시험문제지를 가르친 학원원장 등 23명을 공개적으로 기소하였다.
⑤ **이 사건에서 저작권자인 ETS나 칼리지보드는 수사요청도 하지 않았고, 재판에 협조를 하지 않아서 기소 후에 2015년 5월 현재까지 재판은 중단되고 있다.**
⑥ 검찰은 협조를 하지 않는 저작권자인 ETS나 칼리지보드에 대해 미국정부에 수사협조촉탁신청까지 하면서 저작권위반 혐의로 내국인처벌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칼리지보드나 ETS의 회장은 연봉이 하바드대 총장보다 더 많고 연간 매출액이 1조 5천억원인 거대업체다. 문체부가 2006년 비친고죄 도입의 필요성이라던 개인 저작자를 위함도 아니고, 국내 저작권산업 발전을 위함도 아니었다.**
⑦ 그럼에도 검찰의 저작권 수사로,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해외동포, 해외유학생과 미국 등 유학을 위해 SAT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학습권 침해와 명예를 훼손했다. 또한 저작권자인 ETS도 공신력훼손 때문인지 또다른 미국 수능시험 경쟁사인 ACT가 한국에 진입하는 타격을 입는 등 결국 저작권자에게도 피해가 컸다.
⑧ **놀라운 사실은 이미 2011년도에 미국 본토에서 여장을 하고 여자시험까지 대리시험을 치는 등 16번이나 SAT 시험를 대리해준 미국 유명대학교 대학생이 적발되었으나, 저작권 위반이나 업무방해로 처벌을 받지는 않았고, 대리시험을 한 학생이나 대리시험을 의뢰한 학생이나 모두 형사처벌 없이 대학교에 다니고 있다.**
⑨ 반면 한국에서는 저작권자의 요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친고죄 조항을 남용하여 보호해야 할 자국의 학생들까지 범죄인으로 강제수사에, 미국유학 등을 포기하게 만들면서 23개의 학원과 학생이 기소되어 재판 중이다. 현재 국회 교문위와 법사위에서 저작권법을 친고죄로 환원 · 개정법안에 정부(문체부)만 반대 중이다.

위 SAT사건은 법개정 전이라도 법원이 공소기각을 하든지 검찰이 공소취하를 하는 것이 국민 인권과 정의와 역사를 존중하는 선진 민주사법의 자세라 할 것이다.

대법원이 '소송촉진법'을 위반(민사67%,형사 31.33%)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고, 2년 이상 판결선고를 지체한 형사 피고인만도 구속 5명, 불구속 489명이나 된다. 118명의 재판연구관(법관은 108명)들이 사실상 심판하면서, 사건이 많아서라고 변명하지만, 분명한 위헌 · 위법한 직무유기 · 인권침해다

대법원이 "소송의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 의무의 신속한 실현과 분쟁처리의 촉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제21조-항소심및 상고심은기록을 송부받은날부터 4개월이내에 판결을 선고하여야한다>상습위반으로 인권침해가 심각하다고 조사되었다. *<상세한 관련 자료는 법률연맹 홈페이지보도자료 (7쪽, 2015.4.17)>*

여기에, **수사요건도, 기소요건도 되지 않는 억지 사건, 즉 법조비리, 검찰권 남용의 전형인 사건이 1심 무죄, 2심무죄 판결선고 후 2년이 넘도록 대법원이 지체 중인 사건을 공개하며, 분노 · 규탄한다.**

변호사 낀 7인의 소송사기단을 비호한 검찰간부가 되레 피해자를 강제수사 · 기소하며 초토화시켰음에도, 1심, 2심에서 무죄선고 받은 24년 전통의 법률연맹임원 관련사건을 **<더욱이, 정당한 상고이유도 없는-형소법 제383조 제4항>** 대법원이 사정 · 이유없이 판결선고를 2년<26개월>이상 지체하고 있다.

억울한 수사 · 기소에,1심, 2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피고인(법률연맹 간부)이 계속 피고인 신분으로 인권침해를 당하게 하고 있다.(대법원 2013도3642호, 2013. 3. 29 접수됨) 대법원 형사1부, 주심<3년째>대법관고영한과 주심의 전속재판연구관-부장판사급 법관인 나상용,송경호,이준철,한애라,진광철-의 직무유기로 인한 심대한 인권침해와 검찰비위를 은폐했다는 의혹에, 자진사퇴나 해명을 요구한다.

법이 곧 국가다! 합당한 입법과 공정한 사법이 곧 국가 개조다! 법이 죽으면 국가도 정의도 죽는다!

대한민국 개혁 지상과제

국가적 재난이나 부정부패는 대부분 법과 도덕이 마비된 관피아(공직자)와 국민 모두의 책임이다

01.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의 원동력 : 대한민국과 한민족의 선진적이고 독창적인 '전통과 문화와 역사'를 교육하고, 일제의 수탈과 6.25전란의 폐허에서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뤄낸 '현대사'도 선양하면서, '가족사랑'을 확대(친친친민의 정치철학)하여 국민과 청소년들이 국가와 사회공동체를 사랑하고 자긍심과 사명감을 갖도록 합시다.

02. 국가통치구조 개헌과 조국통일 : 정·부통령 연임제, 정부의 법률안제출권삭제, 국회 상하양원제와 예산법률주의도입,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구성·운용의 문제, 지방자치 등의 '국가통치구조'를 개정·보완하기 위한(기본권신장은 물론), 헌법개정을 '연대'해서 추진하며, 또한 조국통일과 환경보호의 절실한 가치를 정책화·생활화합시다.

03. 민주주의근본원리 견제와 균형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정의와 원칙'의 최종 판단기관이므로 '법조인'만이 아닌, 경륜과 덕망있는 지도자들로 구성케 하고, 국가적 재난과 부정부패, 사법비리의 요인인 검찰의 국가형벌권(수사지휘·종결권, 영장청구권, 기소편의·독점권, 상소권, 형집행권 등)독점을 분리하여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도록 합시다.

04. 민주주의요건 국가기관 공선제 : 모든 국가기관(공직자)을 국민이 선출하고 임면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이다. 특히 국민의 안전과 권익보호, 법질서확립과 '인권의 보루'이지만 한편 '인권침해' 우려도 큰 경찰(서장·청장), 검찰(검사장·총장), 법관들을 '선출'함으로써 사법주권을 실현하고, 사법기관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합시다.

05. 민주정치와 사법의핵심 배심제 : 배심제는 중요한 민주주의 정치제도이며 민주적인 사법제도로서, 이제 우리나라도 인간(국민)에게 최중요한 생명·자유·재산·명예 등을 좌우하는 '검찰과 법원'의 기소와 재판과정에 상당수(10~20인 내외)의 '배심원'들이 참여하여 사법의 정당성·공정성을 확보하게 합시다.

06. 정당의 자유와책임 법질서존중 : 정당과 사회(시민)단체들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와 그 책임, 신문 방송 등 언론의 '자유와 책임'을 법률로 명확하게 하여, 자유 평등한 민주복지국가를 실현하는 '법과 법치질서'를 존중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엄수하게 합시다.

07. 입법사법과 정책의 책임실명제 모든 법과 제도와 정책의 도입 및 개·폐를 추진한 사람(정당 등)의 '실명'과, 입법·사법·정책과정에서 진실을 왜곡시킬 수 있는 국회의 전문위원, 대법원·헌법재판소·대검찰청 연구관들의 실명도 공개하여, 위법·왜곡한 '검토보고' 등이 드러날 결우에 엄중히 문책합시다.

08. 관료주의 병폐의 예방치유방안 : 경악할 세월호 참사는 물론, 각종 대형사고 또한 '관료제의 반민주적 병리현상'의 필연적 결과로써, 근본적인 대책으로 1)실명책임제(사고예방효과), 2)책임윤리과목을 임용요건화하고 청렴강직한 윤리교육(애국심·민주책임의식)을 실시하고, 3)국회와 지방의회의 감사권을 활용(의원 또는 유권자로서)합시다.

09. 적법절차 엄수 철저기록과 보존 : 모든 국가기관의 중요한(?) 직무는 '헌법·법률·적법절차'를 엄수하고, 철저히 '기록하고 보존'케 하며, 특히 법원의 '판결서'에는 5.16직후 삭제된 '사실과 쟁점'을 필히 기재하게 하고, 사법과정(피의자신문, 재판과정)등은 '녹음·녹화'하게 하되, 이를 위반하거나 왜곡한 자는 엄중처벌하게 합시다.

10. 무고위증엄벌 나쁜 검판사 추방 : 국가 사법기능을 교란시키는 무고와 위증 범죄를 엄중처벌하여 근절시키고, 검찰권, 사법권(민사, 형사, 행정, 특허, 선거, 가사, 군사재판)을 유기·남용(편파, 사실왜곡, 범죄자비호, 없는 죄조작 등)하고, 무책임·무지·편파로 '왜곡'된 처분이나 판단을 하는 나쁜 검사나 법관을 가중처벌하여 퇴출시킵시다.

11. 나쁜사법관행 제도 국민들격분 : 검·경의 내사(민주적통제가 없는 강제수사, 장기화 일쑤)등 수사권 남용, 형해화된 법관기피신청제도, 감찰·감사의 감싸기 관행, 수사와 재판기록 및 증거자료 등을 조작·은익·폐기, 과정·절차마다(관할, 배당, 송달, 전산입력, 기록관리, 등사열람)왜곡과 방해, 법조비리 원흉인 '변호사 보수' 문제 등 '사법폐단'을 혁파합시다.

12. 재판청구권마저 차단하는 악법 : '헌법재판소'의 변호사강제주의를 철폐하고, 억울한 피해자의 고소·항고·재정신청도 차단당하기 일쑤이므로, '사인소추제'를 도입해야 하고, 터무니 없이 과다한 '인지대' 때문에 민사재판 또한 제대로 청구할 수도 없는(비리관료와 나쁜 제도 때문에 국민들은 피해나 손해를 당해도 '법의 보호' 못 받아) 악폐를 개혁합시다.

13. 인권침해와 형법의 보충성원칙 : 국가형벌권 (형사법의 이념은 실체발견보다 인권보호임)은 개인이나 단체를 한순간 '초토화' 시킬 수 있는 바, 민사 등 가벼운 방법으로 법익보호가 불가능할 때, 최후수단으로 적용(보충적)하는 '원칙'을 지키도록 촉구합시다.

이상은 법률(소비자)연맹이 1994년 선언했던 사법개혁12대과제를 보완하여, 2014,5,15, 한국NGO연합과 함께 채택 · 선언함

바른입법과바른사법을위한 한국NGO연합 / 국정감사NGO모니터단 / 국회의정종합모니터단 / 사법개혁과소비자보호를위한NGO연대 '공추협'

문의 및 불공정피해사례 접수처 :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총재 김 대 인) / 137-869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52-9 소강빌딩 전화 02-523-8760~7 이메일 GOODLAW@GOODLAW.ORG WWW.GOODLAW.ORG